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대 · 중 소 기 업 상 생 협 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1)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별표 2]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금액란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500만원
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1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1억원
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3호	500만원
바.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1천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연 락 처	(042) 481 - 3933